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2026년 01월 03일 실시 예정인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1. 열람일시

- 가. 기간: 2025년 11월 26일 (수) ~ 2025년 12월 09일 (화) (주말·공휴일 제외)
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점심시간(오후12:00 ~ 13:00) 제외]

2. 열람장소

공공지원 현장사무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127, 가람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열람내용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 거 권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일 기준 해당 정비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소유권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권이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은 열람 장소에 비치)
- ② 공유자 전원(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토지등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붙임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2) 해외거주자가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붙임서류:**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붙임서류:**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 **공통(필수)제출서류:**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이후 선거일 전일까지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권리변동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의 안내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이의신청서, 위임장·대리인지정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였으니,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garamapt>)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